

2020년도 3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접수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 제1항 제14호 및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범위), 제6조(지원조건), 제7조(지원제외), 제8조(신청접수)에 따라 2020년 3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접수 개요

- (지원대상)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중소·중견 재활용기업 대상)
 - ※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미접수
- (접수기간) 2020.6.22.(월)~6.24.(수)
 - ※ 접수규모 초과 시 조기마감
- (접수규모) 약 800억원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http://loan.keiti.re.kr> ※첨부1 참조)만 가능
- (구비서류)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서류, 재무제표 등
 - ※ 구비서류 세부사항 첨부2 참조
- (사업기간) 융자승인 된 날로부터 6개월

2. 융자지원 및 조건

- (지원분야)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시설분야 시설 및 운전분야
- (지원조건) 분야별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융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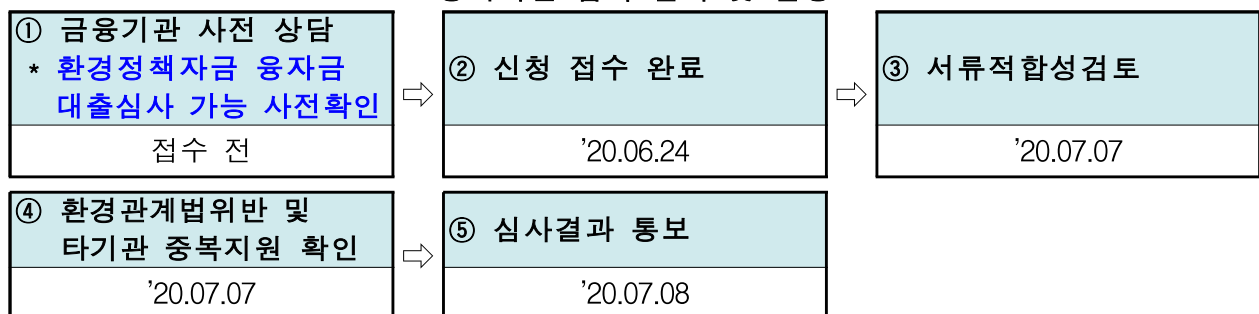
구분	세부분야	예산규모	대출금리	대출기간	업체당 지원한도액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시설설치자금	300억원	분기별 변동금리 (2분기 기준 1.10%)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50억원
	성장기반자금	450억원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1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원			5억원

※ 대출금리: 분기별 환경부 고시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에 따라 변동

- (지원제외) 토지매입비와 부가가치세 및 임대·매각 목적의 시설
- (지원방식) 담보대출방식
 - ※ 융자지원 심사 승인 후 융자취급은행과 담보협의 필요
- (우대조건) 지원한도액 추가(최대 5억) 신청 가능
 - 고용실적 우수(10% 이상 증가) 기업: 성장기반자금 신청한도 최대 15억원
 - ※ 전년도 평균 종업원 수 대비 접수 시점 종업원 수 10% 이상 증가

3. 융자신청 및 승인심사 주요사항

<융자지원 심사 절차 및 일정>



- 환경정책자금 신청·접수
 - (금융기관 사전 상담 필수)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과 사전 상담한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 심사 사전확인서 필수 제출
 - ※ 관련 서식 첨부5 참조

- (서류제출 기간) 용자 신청·접수 기간 내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불승인)

※ 용자신청서 작성 시 ①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서비스 조회 및 ② 나이스신용정보 제출(조회) 동의 시 제출서류 최대 6종(운전자금 3종)으로 간소화 가능

[참조]

- (재활용 긴급경영안정자금) 업력 2년 이상,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이면서 전년도 매출액 25억 원 이하 영세 재활용기업 운전자금 신청의 경우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이 유리

○ 환경정책자금 지원 승인 심사

- (심사기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 과다 신청 등 용자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 심사기간 연장 가능

- (서류심사) 신청자격, 사업계획 및 신청자금 소요내역 적정성 등 심사

- (환경관계법규위반) 30일 또는 1개월 이상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 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여부 검토

- (중복지원)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타 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 또는 승인(추천) 내역 검토

※ 신청 기업이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사업으로 자금 지원을 받은 내역이 있더라도 운전 분야는 신청이 가능 하며, 시설 분야는 타 기관과 중복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다만, 예산규모가 동 사업 신청한도를 초과 할 수 없음.

○ 우선지원 순위 평가

- (심사절차)



< 환경정책자금 우선 승인·지원 절차 >

- (우대대상) 우대대상은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0' 순위**

[우대대상 기업]

1. 영세기업(업력 2년 이상, 근로자 10인 미만 및 매출 10억 미만)
2.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3. 환경부와 대기오염, 미세먼지 배출저감 자발적협약 체결 기업으로서 대기시설 개선 자금 신청 기업(환경개선자금만 해당)
4.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성공 판정 기업
5. 환경분야 기술이전(실시권 취득 등) 사업화 추진 기업
6. 환경 R&D 성공과제 기술 사업화 추진 기업
7.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11조제2항의 연계승인 기업
8. 국가현안 및 정부정책 상 우선지원이 시급하다고 환기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은행심사순위) 정책우대와 평가순위 적용, **융자금 한도 내 순위에 따라 '우선 융자승인'**하고 **후순위기업은 '예비승인'***

* 예비승인: 우선 승인·지원 기업 은행심사 결과 및 승인 포기 등에 따라 약 30일 기간(최초인출기간) 동안 융자승인 대기

※ 우선지원 순위 평가 기준 및 점수 : 첨부4 참조

4. 지원제외 대상 기업

- 최근 2년 재무상태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매출, 자본금 등 매우 우량하여 정책지원 시급성이 낮은 “한계기업” 해당 사업자 *첨부3 참조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타 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 또는 승인(추천) 받은 사업자

※ 신청 기업이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사업으로 자금 지원을 받은 내역이 있더라도 운전 분야는 신청이 가능 하며, 시설 분야는 타 기관과 중복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다만, 예산규모가 동 사업 신청한도를 초과 할 수 없음.

- 전년도와 당해 연도에 **환경관계법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환경관계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등 법률다툼이 진행 중으로 미확정 상태인 경우를 포함한다.
- 과거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지원받은 사업자로서 최근 승인연도가 1개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제외)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지원연도별 재신청 가능 여부

지원연도 구분	2020년도 시설자금	2020년도 운전자금	
		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2020년도 이전 미지원기업*	○	○	○
2019년도 시설자금 지원기업	×	×	○
2019년도 운전자금 지원기업	×	×	○
2019년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기업	×	×	○

* 2020년 이전 미지원기업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중복지원이 가능함. 단, 운전자금은 성장기반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1개 자금만 선택 하여 지원이 가능함.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의한 최근 5년간(당해 사업연도 포함) 정부지원이력 조회 결과, 정부 융자금 지원 총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18조에 따라 융자승인이 취소된 후 융자승인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승인 취소된 융자원리금 회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자
-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허위사실, 위·변조”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여 융자승인이 취소된 후 제20조에 따른 융자원리금 회수완료일로부터 5개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 세금을 체납중이거나, 휴·폐업중인 사업자.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임직원 및 회사의 횡령, 사기 등 민·형사 사건과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 과거 융자지원받았던 자로서 신고 및 보고의무 미준수 기업

※ 다만, 2020년도 신설 규정으로서, 이전 지원 건에 대하여 소급적용 제외

1.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14조제3항의 조치(승인포기 신청) 없이 방치하여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취소(최초인출기간 도과) 사업자로, 당해 최초인출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14조제3항의 조치(일부 승인포기 신청) 없이 방치하여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일부 승인취소(사업기간 도과) 사업자로, 융자지원연도로부터 3개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22조제1항제3호의 ‘성과보고’의무에 불응·거부하거나 내용이 허위·부실한 사업자. 다만, 지원제외 기간은 보고의무 연도 후 지원연도 1개년으로 하며,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지원기업은 본조 5호의 기간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5. 접수 문의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시설: 02-2284-1734, 운전: 02-2284-1735)

- 첨부
1.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이용절차.
 2. 환경정책자금 신청 제출서류.
 3. 한계기업(지원 대상 제외) 기준.
 4. 우선지원 순위 평가 기준 및 점수.
 5.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끝.

첨부1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http://loan.keiti.re.kr>) 이용절차

화면예시	절차
	① 회원가입 - 가입 절차에 따라 정보입력 ② 공인인증서 등록 - 용자관리시스템 이용을 위한 필수 등록, 미등록시 접속 불가 ③ 자금별 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 등록
	④ 정보공개활용, 초과승인 동의
	⑤ 신청서 작성 - 기업규모, 재무정보, 평가순위 정보, 용자신청서, 기업현황, 영업현황, 사업계획, 구비서류, 추가의견, 창업기업여부 등

- ⑥ 구비서류 등 첨부 및 상태 확인
- 자금별필수·선택서류 구분 및 등록

- ⑦ 초과승인 동의, 성실히행 준수
서약
- ⑧ 최종 확인 후 신청 완료

첨부2

환경정책자금 신청 제출서류

□ 전체 기본 공통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 고
1	• 사업자등록증	①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서비스 조회 동의 ② 나이스신용정보 제출(조회) 동의 ※ 위 ①,② 동의 거부 시, 직접 스캔파일 등록
2	• 법인등기부등본	
3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부속 명세서)	
4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5	• 사업장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 토지, 건물 임차 사용 시, '임대차계약서' 필수 - 법인 또는 개인사업 대표자 소유 부동산인 경우 ①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서비스 조회 동의 ② 나이스신용정보 제출(조회) 동의 ※ 위 ①,②에 동의 거부 시, 직접 스캔파일 등록
6	• 우선지원 순위 선정에 필요한 기타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인증서, 특허증 등)	[별표 5] 참조, 실제 지표 항목에 해당하여도, 서류 미제출 또는 사후 보완은 점수 인정하지 않음.
7	• 용자금 대출심사 가능 확인서(용자취급은행)	서식 [별지 1] 출력 → 용자취급은행(영업점)과 용자 상담 후 확인 날인 후 스캔파일 등록
8	• 사업장, 공사현장 최근 사진	중견기업의 경우만 제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9	• 중견기업 확인서	

□ 자금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구분	제출서류	비 고
운전, 시설 공 통	•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증 (중간처리업, 종합재활용업 등 인허가서)	직접 서류를 스캔하여 등록 제출 *신규 창업 시 “적정 통보서” 등록 제출
	•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창업 기업은 설치완료 후 제출 가능
	•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증 (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창업 기업은 설치완료 후 제출 가능
	• 지방자치단체 대행계약서	생활폐기물 재활용사업자의 경우에 해당
시설 분야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포함
	• 건축, 설비시공, 시설공사 등 계약서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와 시공자간 계약서 포함
	• 시설·장비·건축 세부도면	장비구매의 경우 팜플렛 등 가능
	• 건축 허가서	- 공장 등 신축, 증축, 개축인 경우 -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서비스 조회 동의 ※ 동의 거부 시, 직접 스캔파일 등록

첨부3**한계기업(지원 대상 제외) 기준**

☐ 하(下)한계기업 :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구분	한계기준	산식
재무안정성	• 2년 연속 자기자본 잠식률 50%이상	• 자본잠식률 = $\frac{(\text{자본금} - \text{자기자본})}{\text{자본금}} \times 100$
금융비용 부담정도	•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 $1 > \text{이자보상배율} = \frac{\text{영업이익}}{\text{금융비용}}$

첨부4

우선지원 순위 평가 기준 및 점수

구 분	번호	평 가 항 목	증빙서류	점수
합 계				55
성장성	1	총자산이익율(ROA) 증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 명세서)	2
	2	매출액 증가(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1
	3	총자산 증가(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1
	4	신규 인력 채용(전년 평균 근로자수 대비 접수일 기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5
	5	환경 이외 분야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상표권 제외) 보유	특허증 등	1
글로벌 성장성	6	수출 실적 증가(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최근 2년 수출실적증명서	3
	7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	해당 지정서	1
	8	수출수주 1억원 이상 계약체결(최근2년이내)하여 납품 시	수출계약서 등 증빙서류	2
	9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 기업	환기원 관련 협약서	1
	10	환경기술 국제공동현지 사업화 지원 기업	환기원 관련 협약서	1
환경사업 전문성	11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환기원 지정서	2
	12	친환경 인증기업(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해당 인증서	2
	13	우수재활용(GR) 인증 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해당 인증서	1
	14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또는 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 인증	해당 녹색 인증서	1
환경기술 우수성	15	환경 분야의 해외 또는 국내 특허, 실용신안 보유(상표권 제외)	해당 증서	2
	16	환경신기술 기술검증 또는 인증 기업	해당 검증서, 인증서	2
	17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중 우수환경기술 50선 선정	해당 증서	2
	18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추적평가결과 우수등급 이상 수여	해당 증서	1
지속가능성	19	녹색경영기업 환경성평가(enViance) 우수 기업(A~AAA)	환기원 자체 확인(제출없음)	3
사업 연계성	20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사업 참여하여 성공 판정	환기원 통보문	5
	21	환경기술 이전, 거래에 따른 기술실시권 보유	해당 계약서 등 보유 증빙	3
정책 부합성	22	영세기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고 매출 10억원 미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23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해당 증서	3
	24	환경부 통합환경허가관리제도 참여, 이용 기업	환경부 통합환경허가결정서	1
	25	환경부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자발적 협약 체결 기업	관련 환경부와의 협약서	5
	26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기업	해당 인증서 또는 확인서	1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 융자금 신청 기업

- 회 사 명 : **한국산업** (사업자번호 :)
-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 대 표 자 : **김한국**
-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예정액 및 대출심사 담보 확보 계획

융자 신청 금액	담보 확보 가능 예상
2,000 백만원	합계 : 2,500 백만원

담보물 (부동산 등)	물건 소재지 (보증기관명)	소유자 (관계)	시세가등 금액 (백만원)
보증서	기술보증기금	-	1,000
부동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본인	1,500

□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

본 은행은 위 기업의 환경정책자금 신청계획에 대하여 사전 상담하였으며 대출심사가 가능한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본 확인서는 환경정책자금 융자승인 후 실제 은행 여신심사의 대출승인을 보장 또는 약속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대출심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행: **한국은행** 지점: **불광동지점**
 소속: **기업대부계** 성명: **차장 이환경** (직인)

20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